

서울특별시 기부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 례안

(박순규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2786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 : 2021년 10월 14일

발 의 자 : 박순규 의원(1명)

찬 성 자 : 권수정, 김경우, 김기대,
김인제, 김재형, 김정태,
김제리, 김창원, 김태수,
김희걸, 노승재, 문장길,
박기재, 박상구, 서윤기,
성흠제, 송도호, 송명화,
송아량, 송재혁, 양민규,
유 용, 이영실, 이정인,
이준형, 임종국, 장상기,
전병주, 전석기, 최 선,
최웅식, 황규복 의원(32
명)

1. 제안이유

- 「서울특별시 기부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1조 목적에는 ‘건전한 기부문화를 활성화함을 목적으로 한다’고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조문에는 기부문화 활성화에 대한 내용이 없고 수동적인 기부자 예우에만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기부문화 활성화 부분을 추가하고자 함.
- 서울시에 기부된 기부금액은 사회 전반적인 기부문화의 확산 영향으로 2019년 60억원, 2020년 103억원, 2021년 348억으로 증가되고 있는 추세임.

2. 주요내용

- 가. 시장은 자발적인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.(안 제1조2)

나. 시장은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홍보 등의 사업을 하도록 함.(안 제5 조의2)

다.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도록 용어를 개정 함.(안 제4 조제1항, 제5조제2호, 제6조제1항, 제7조, 제12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」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참조

다. 기타 : 신·구조문대비표

서울특별시 기부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기부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조의2(시장의 책무) 서울특별시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시민과 기업의 자발적인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제2조 중 “‘법’이라 한다.”를 “‘법’이라 한다”로, “서울특별시시장(이하 ‘시장’이라 한다.)”을 “시장”으로, “(이하 ‘기부금품’이라 한다”를 “(이하 “기부금품”이라 한다)”로 한다.

제4조제1항 중 “‘기부증서’라 한다.”를 “‘기부증서’라 한다”로 한다.

제5조제2호 중 “‘시’라 한다.”를 “‘시’라 한다”로 한다.

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5조의2(기부문화 활성화) 시장은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.

1.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홍보
2. 기부관련 지역사회 및 유관기관 등과의 소통과 협력체계 구축
3. 그 밖에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

제6조제1항 중 “법제5조제2항”을 “법 제5조제2항”으로, “기부심사위원회”를 “기부심사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기부자”

를 “위원회는 기부자”로, “사항을 ‘기부심사위원회’가 심의한다”를 “사항을 심의한다”로 한다.

제7조의 제목 “(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·운영)”을 “(위원회의 구성·운영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기부심사위원회(이하 ‘위원회’라 한다)”를 “위원회”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그밖”을 “그 밖”으로 한다.

제12조 중 “세부 시행”을 “시행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신 설></p> <p>제2조(적용범위) 본 조례는 「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‘법’이라 한다.) 제5조제2항제1호와 법 제3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각 법률에 따라 자발적으로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<u>서울특별시</u>(이하 ‘시장’이라 한다.)에게 기부금 또는 현물(이하 ‘기부금품’이라 한다)을 기탁한 자에게 적용한다.</p> <p>제4조(기부자 명부관리 등) ① 시장은 제2조에 따라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이를 확인하는 증서(이하 ‘기부증서’라 한다.)를 발급할 수 있다.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② (생략)</p> <p>제5조(기부자 예우) 시장은 기부증서를 발급받은 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우할 수 있다.</p>	<p><u>제1조의2(시장의 책무) 서울특별시</u> <u>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시민과 기업의 자발적인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</u></p> <p>제2조(적용범위) ----- ----- ----- “법”이라 한다----- ----- ----- ----- <u>시장</u>----- ----- (이하 “기부금품”이라 한다)----- -----.</p> <p>제4조(기부자 명부관리 등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“기부증서”라 한다----- -----.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5조(기부자 예우) ----- ----- ----- -----.</p>

1. (생략)
2. 서울특별시(이하 ‘시’라 한다.)
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초청
3. ~ 6. (생략)

<신설>

제6조(기부심사위원회 역할 및 기능) ① 법제5조제2항에 따라 시에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와 제5조제6호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부심사위원회를 둔다.

② 기부자 명예의 전당, 상징물 설치의 장소 및 규모, 종류, 기간 등 예우에 관한 사항을 ‘기부심사위원회’가 심의한다.

- ③ (생략)

제7조(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·운영) ①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시장 소속으로 두는 기부심사위원회 (이하 ‘위원회’라 한다)는 위원장

1. (현행과 같음)
2. ----- “시”라 한다-----
3. ~ 6. (현행과 같음)

제5조의2(기부문화 활성화) 시장은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.

1.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홍보
2. 기부관련 지역사회 및 유관기관 등과의 소통과 협력체계 구축
3. 그 밖에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

제6조(기부심사위원회 역할 및 기능) ① 법 제5조제2항-----

----- 기부심사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-----.

② 위원회는 기부자 -----

----- 사항을 심의한다.

- ③ (현행과 같음)

제7조(위원회의 구성·운영) ① ---

----- 위원회-----

1명,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
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(생략)

③ 위원은 공무원 4명 이내, 시의
원 2명 이내, 그밖에 학식과 경험
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
하거나 위촉한다.

④·⑤ (생략)

제12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세부
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
정한다.

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③ -----
----- 그 밖-----

-----.

④·⑤ (현행과 같음)

제12조(시행규칙) ----- 시행-----

-----.

문서번호	2021091300000002
------	------------------

미첨부 사유서 (1호)

요청인 : 박순규 의원	담당 : 조도형 과장 이원상 팀장 공도연 예산분석관
접수일 : 2021.09.13	
회신일 : 2021.09.24	내용문의 : 02-2180-7952

서울특별시 기부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목 차

1. 비용발생 요인
2. 미첨부 근거 규정
3. 미첨부 사유
4. 작성자



서울특별시의회 사무처
예산정책담당관
Seoul Metropolitan Council

○ 기부문화 활성화 홍보 ≙ 147,000천원

- 5년간 기부문화 활성화 홍보비용 산식 = $\sum_{i=1}^5 (\text{연간비용})_i$

※ i = 비용추계 연차(2022~2026)

- 연간 기부문화 활성화 홍보비용 = 29,400천원

※ 2021년 서울시 예산서(평생교육국) 참고

· 평생교육 운영 활성화/ 평생교육 홍보 및 회의 : 29,400천원

4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

담 당 관 조도형

추계세제팀장 이원상

분석관(주무관) 공도연

☎ 02-2180-7952

e-mail : ehdu0@seoul.go.kr